

	<b>교수업적평가위원회 운영규칙</b>	규정번호		5-0-7	
		제정일자		1996.06.04	
		개정일자		2021.03.01	
		개정번호	Ver .9	총페이지	2

**제1조(명칭)** 본 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위원회는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전임 교수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본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 위원은 교학처장,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, 종합정보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1.03.01.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기획처장이 한다.

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당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**제4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.03.01.>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<신설 2021.03.01.>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 소집 및 의결)** ①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1.03.01.>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21.03.01.>

**제7조(활동)** 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
1.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기획, 평가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의 개정안 발의
2. 교수들이 제출한 평가 자료의 심의
3. 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연구
4. 기타 교수업적평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연구

**제8조(비밀유지)** 각 위원은 교수업적 평가용 자료 및 그 심의 결과중 제출자의 개인별 사항은 일절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.

제9조(기록) 회의 내용은 간사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, 위원장이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.

제10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.  
<개정 2021.03.01.>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기 시행된 위원회의 활동과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